

새벽 5시까지 여야가 줄다리기를 계속했던 세밑 국회에서는 에너지 관련 세법 개정안들도 '조용히' 통과됐다. 굼직굼직한 정치 현안에 견줘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적지 않다.

가장 주목할만한 내용은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발전용 석탄(유연탄)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는 점이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유연탄 1kg에 18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원래 정부는 kg당 30원을 부과하고 초기에는 탄력 세율을 적용해 21원을 매기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4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18원으로 낮춰주는 것으로 완화됐다.

과세 무풍지대에 있던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가격구조 합리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다른 에너지에 견줘 낮은 전기요금이 전기 소비량을 급속히 늘려온 만큼, 수요 관리 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였다.

석탄에 세금이 부과된 사연은?




황보연
한겨레 신문/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

실제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구조를 들여다보면, 1차 에너지인 석유보다도 2차 에너지인 전기가 더 저렴한 '비정상'적인 요소가 들어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전력과 실내등유 간 상대가격은 1.45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0.62에 그친다. 그만큼 전기가 훨씬 싸다는 뜻이다. 낮은 전기요금은 가격 왜곡을 심화시켜 유류나 가스에서 전기로 소비가 빠르게 대체되는 현상을 불러왔다. 기업들은 앞다퉈 전기 사용을 늘렸고 일반 가정에서도 겨울철 난방을 전기로 바꿨다. 이 바람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기소비량은 OECD 회원국 평균에 견줘 7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치달았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 프로판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kg당 LNG는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20원에서 14원으로 세 부담이 완화된다. 전기의 대체연료에 대한 과세 완화로 전기 소비를 이들 연료로 분산시키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동안 LNG의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지나치게 많았다. 3%와 관세와 kg당 60원의 개별소비세, kg당 24.2원의 수입부과금, kg당 4.9원의 안전관리부담금, kg당 110원의 부가가치세 등이 그것이다. 발전단가가 높은 데는 이런 세 부담이 한 몫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엇박자를 취해온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선 유연탄과 마찬가지로 세 부담이 없었던 우리나라에 대한 과세 여부가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이 쓰이는 연료다. 유연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외에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과세 특혜를 더 이상 유지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요구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맞물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빠르게 늘어난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회성 전기요금 인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산업계와 일반 전기 소비자에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정확한 ‘시그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장기 플랜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풍부한 석탄 자원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해온 호주가 지난 5년간 지역별로 50~70%가량의 전기요금을 올리면서도 전기소비를 두드러지게 줄이는 성과를 가져온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집필자의 논지나 의견은 당 매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